

창원지방법원 2023. 2. 7 선고 2021가단472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4. 5. 30 선고 2023나103240 판결

창원지방법원 2023. 2. 7 선고 2021가단4720 판결

전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론종결 2022. 11. 22.

판결선고 2023. 2. 7.

주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창원시 의창구 D 전 321㎡ 지상 목조 칼라강판지붕 단층주택 25.78㎡, 목조 스테트지붕 창고 9.91㎡를 각 철거하고, 위 대지 321㎡를 인도하고,

나. 2022. 10. 12.부터 위 가.항 기재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4,750,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07. 4. 16. 창원시 의창구 D 전 321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2007. 4.

12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 칼라강판지붕 단층주택 25.78㎡과 목조 스레트지붕 창고

9.91㎡(이하 위 단층주택과 창고를 합하여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이 사건 건물 철거청구 및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건물을 지으면서 설치한 전기시설, 수도시설, 지붕개량, 30년 이상 된 감나무 4그루 등에 대한 보상 등으로 22,300,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, 가사 피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203조에서 상환을 인정하는 이 사건 토지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가치를 증대케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

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22. 8. 2.부터 2023.

8. 1.까지 차임은 연 4,750,8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. 10. 12.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년 4,750,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윤아